

의안번호	제 621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5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일부개정(2016.12.26.)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

2. 주요내용

- 토석채취료 관련 산림청과 행정자치부간의 협의안 반영(안 제30조)
 - 원석시가 산정기준 변경 : 용도별로 기준하여 산정
- 개정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정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”을 “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,”로 한다.

제4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 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
2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
3.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
4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.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5.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

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
6.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
7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8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채광물채취료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서 “원석시가”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<u>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제2항의 <u>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</u> <u>예정가격 결정자료로</u> 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④ · ⑤ (생략)</p> <p>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· 폐구거 · 폐제방 · 폐하천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</u></p>	<p>제30조(채광물채취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서 “원석시가”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③ ----- <u>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,</u> ----- ----- 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</u> 이 경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</u></p> <p>2. <u>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</u></p> <p>3. <u>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</u> <u>· 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,500제곱미터 이하, 그 밖의 지역에서는 3,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(다만, 특별시·광역시의 동 지역은 300제곱</u></p>	<p><u>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<u>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3. <u>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</u></p>


현행	개정안
<p><u>미터, 시의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, 읍·면 지역은 1,000제곱미터 이내를 한도로 한다)</u> <u>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. 다만, 다수의 도 소유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문에 따른 1,500제곱미터 또는 3,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,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4. 제3호에 따른 분할매각 시 건축면적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시·군 조례로 정하는 건축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축용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4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.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5. <u>도와 도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,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, 광역시·군의 읍·면 지역 1,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. 다만, 도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</u></p> <p>6. <u>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(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)로서 도유지 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</u></p> <p>7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로서 <u>시·군의 지역에 위치한 도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 중인 자에게 10,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5. <u>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</u></p> <p>6. <u>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</u></p> <p>7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 <p>8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</p>


현행	개정안
	<p><u>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</u> <u>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</u> <u>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</u> <u>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</u> <u>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</u> <u>는 경우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국민행복 대한민국, 정부3.0



행정자치부



수신 **산림청장(법무감사담당관)**

(경유)

제목 **토석채취료 관련 공유재산 조례 개정(안) 검토의견 회신**

1.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-1147(2016.2.22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와 관련하여 토석채취료 관련 공유재산 조례 개정(안)에 대한 우리 부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가. 공유재산 조례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-산림청 의견)
<p>제31조(토석채취료 등)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증에 그 연도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“원석시가”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원석시가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제31조(토석채취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(단서 삭제)</p> <p>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, -----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나. 검토의견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·유지·보존·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, 그 세부적인 운용·관리는 재산의 형태, 용도, 목적 등에 따라 각 부처 청에서 개별 법률(도로법, 하천법, 자연공원법, 산림기본법 등)을 제정하여 운용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, 지방자치단체 소유 산지에서 채취되는 토석의 관리 처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산지 이용에 관한 시책을 종합 수립·시행하는 부처에서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아울러, 토석채취료 산정방법에 관한 귀 청의 공유재산 조례 개정(안)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. 끝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38조(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23.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□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

제16조(수익매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익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
1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

2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

3.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·도의 시·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

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

4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.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5.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6.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
7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8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